

부 산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18느단201323 재산분할

청 구 인 갑

상 대 방 을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7,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과 상대방이 2005. 6.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실혼관계로 지내다가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 사실혼 기간 동안 청구인과 상대방이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나. 갑 9, 10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1, 2, 3호증의 각 영상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이 2005.경 교제를 시작하였고, 2007.경부터 2018. 10.경까지 상대방의 주소지인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서 동거한 사실, 2009.경 열린 청구인의 아들 결혼식에 상대방과 상대방의 동생들 부부가 참석하여 축의금을 낸 사실, 청구인이 2014.경 상대방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2015.경 상대방의 교회연에 참석하여 가족사진을 찍기도 한 사실, 상대방의 동생의 처인 병이 청구인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을 3호증의 2, 3, 을 4, 11, 14호증의 각 기재, 을 10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부산은행 및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8호증의 1 내지 7, 갑 11호증의 각 기재, 갑 12호증의 영상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일정기간 동거하였다는 것을 넘어서서 혼인을 약속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의 일치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 내지 혼인 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여 사실혼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청구인이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2007.경부터 이 사건 빌라에서 상대방과 동거하였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6. 12. 29.에 이르러 청구인이 이 사건 빌라에 전입하였으나, 상대방의 기존 세대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2) 2014.경에 열린 상대방 아들의 결혼식과 2015.경에 열린 상대방의 고회연에 청구인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축의금을 내지도 않았다. 2015.경 이 사건 빌라에서 상대방 손자의 돌잔치가 열렸는데 청구인이 참석하지 않았다.

3) 상대방은 청구인의 남동생들의 결혼식 등 청구인의 가족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의금을 보내지 않았고, 2013.경 청구인 어머니의 장례식에서도 사위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한편 청구인은 2015.경 상대방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상대방의 아내로서 역할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상대방 어머니는 2016. 10.경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4) 상대방의 자녀가 청구인에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이야기하자, 청구인이 '상대방과 혼인신고 안한 상태인데 내가 여기 산다는 걸로 인해서 그런 거를 다해야 되느냐'고 말하였다. 동거기간 중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혼인신고를 한 차례 제안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과 상대방이 약 11년간 동거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일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위 기간 동안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송금을 한 내역은 찾아볼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7. 11. 26.부터 2018. 4. 11.까지 상대방이 청구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횟수가 25회 정도에 불과하다).

라. 따라서 청구인과 상대방이 2005. 6.경부터 2018. 10.경까지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가사 청구인과 상대방이 2007.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거시한 증거, 갑 4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2019. 6. 13.자, 국민은행에 대한 2019. 6. 24.자, 새마을금고에 대한 2019. 10. 4.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빌라는 사실혼 성립 이전인 2005. 12. 23. 상대방이 매매대금을 부담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특유재산인 점, 사실혼 기간 동안 상대방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공과금, 세금 등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였고,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매월 40만 원 또는 그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사실혼기간 동안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상대방과의 공동생활을 위해 자신의 재산에서 지출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2018. 12.경 기준 청구인이 국민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에 합계 7,000만 원 이상의 예금을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청구인이 부산 수영구 ◇◇을 임차하여 2018. 10. 29. 전 입신고를 하였고, 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이 7,000만 원 정도인데(당심 제6회 심문조

서 참조), 청구인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아들이 내주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외에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나머지 소득이나 재산은 각자 관리하는 등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대방의 특유 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020. 3. 30.

판사 오 대 훈